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37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정태호·강준현·신영대

이수진 · 김성환 · 황명선

이학영 · 박홍배 · 손명수

김주영 · 차규근 · 용혜인

김태년 • 권향엽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 법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 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련함(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식별과 대책의 수립·실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컨설팅·교육·훈련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라.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인권·환경기업위 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 바.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아.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 자.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 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하여야 할 것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 및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국내외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 가. 본점의 소재지가 국내인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 "기업활동"이란 기업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 3. "피지배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

다.

- 가. 기업의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인의 지위에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4. "부정적 영향"이란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초래하는 다음 각 목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가. 다음 권리의 침해

- 1)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별표 1에 따른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2)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별표 2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보장하는 노 동권
- 나.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의무와 별표 3에 따른 국 제환경협약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협약에 따라 금 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 5.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제9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면서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 또는 제8호에 따른 공급망 내의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에 다음 각 목의 조치사항이 포함된다.

-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식별
- 나.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수 립 및 실행
- 다. 가목 및 나목의 평가와 환류
- 6. "직접 공급자"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고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
- 7. "간접 공급자"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접 공급자 이외의 상대방을 말한다.
- 8. "공급망"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과 용역 제공 등 기업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국내외의모든 체계와 과정에서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직접 공급자 및 간접 공급자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금융상품과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판매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9.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망한 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단체 및 노동조합
- 나. 가목의 사람 또는 단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 10. "분쟁·고위험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가.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 당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현저히 어려운 지역
 - 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살, 반인간적 범죄, 조직적 차별 등의 국제법 위반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 11.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기업의 대표자(「상법」 제209조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같은 법 제389조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 12. "피해회복"이란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등의 수단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 공동체 또는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 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상응 또는 근접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 한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제도·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기업은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 해하는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다른 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시사용 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기업

-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종속회사의 매출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동일인의 지위에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업활동이 제10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제10조제3항및 제4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 ③ 상시사용 근로자 수 및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인권 · 환경실사 이행체계

- 제6조(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의 수립
 - 2. 인권·환경실사 이행책임자의 지정
 - 3. 이 법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계획 및 결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의 설

치

- 4. 고충처리절차의 운영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인권·환경실사 이행책임자의 업무·권한 및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①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경영책임자등의 주의의무) ① 경영책임자등은 인권·환경실사의실시, 인권·환경실사 결과의 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 ② 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책임을 게을리하여 기업이 타인에 대하여 제3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은 타인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9조(고충처리절차) ①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 내의 다른 기업(외국기업 및 법인격 없는 기업 을 포함한다. 이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라 한다)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고충처리절차는 이해관계자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고충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기업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접수한 신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에 포함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신고를 한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식별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제거 및 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기업은 고충처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고충처리절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 • 환경실사

제10조(부정적 영향의 식별) ① 기업은 자신 및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부문 및 지역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과 기업이 생산 및 공급하는 제품, 용역 및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이해관계자 등을 통하여 자신 및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 및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 1. 기업활동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 적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 2. 기업활동이 아동노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 ④ 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확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각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개연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수립·실행) ① 기업이 자신 및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

- 향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1.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
- 2.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한 기업활동의 중단 또는 변경
- 3. 발생한 부정적 영향의 재발 방지
- 4.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② 기업이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사실 고지 및 제1항 각 호와 제6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요청
 - 가. 직접 공급자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직접 공급자
 - 나. 간접 공급자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간접 공급자 및 직접 공급자에 이르기까지 해당 간접 공급자와 사업관계로 순차적으로 연결된모든 상위 간접 공급자와 직접 공급자
- 2. 제1호에 따라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직접 공급자(중소기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지원(금융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 3.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발생한 부정적 영향의

제거,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제1호의 직접 공급자와 간접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협력과 지원

- 4. 기타 부정적 영향의 효과적 예방, 제거,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가용한 영향력의 활용
- ③ 기업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그에 기여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책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업이 직접 공급자 또는 간접 공급자에게 기업이부담하여야 할 대책 수립・실행 등과 관련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轉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기업은 필요한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중요 사항을 내부 규정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은 직접 공급자 또는 간접 공급자에게 이 장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기업은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절하게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① 기업이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에서 식별한 모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제12조(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의 종료) ① 기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신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고 그 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업은 자신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도급 등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관계 종료의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 제13조(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

가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사과, 보상금의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제1 항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인권·환경실사보고서) ①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인권·환경실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식별 과정 및 내용
 -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한 대책의 내용 및 실행 결과
 - 3. 제13조에 따른 대책의 평가 내용 및 보완 대책의 내용과 결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 서를 제18조에 따른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해관계자가 제18조에 따른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 2. 기업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가 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18

조에 따른 인권·환경기업위원회가 인권·환경실사의 적절성,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기업

- ③ 제1항에 따른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작성 시기·방식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등) ①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제2조제9호가목의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정당한 이 유 없이 특정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적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및 부정적 영향에 의한 취약성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제16조(이해관계자의 정보청구권) ①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기업은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이나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의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와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④ 기업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은 정보의 양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경우 이해관계자는 제18조에 따른 인권・

- 환경기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인권·환경실사의 지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인권 ·환경실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컨설팅, 교육· 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권·환경실사 지원 등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무와 필요에 맞춘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표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3항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거나 변 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표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3항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거나 변

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장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8조(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해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및 관련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심의 및 직권조사
- 2. 분쟁 · 고위험 지역의 지정
- 3. 기업의 인권 환경실사 지원
- 4.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침·표준에 대한 심의 및 제17조제3항 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심의
- 6. 그 밖에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의 지원, 조정 및 규 제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 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

다.

- 제23조(회의의 의사 및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 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분쟁의 해결 등

- 제26조(이의제기) ①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이 절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제2

조제9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절에 따른 이의제기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와 그 밖에 이의제기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기업에 이의제 기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8조(조사) ① 위원회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26조에 따른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이의제기의 내용 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이해관계자·이의제기 대상 기업(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사실·정보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② 위원회가 제16조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하면서 해당 정보가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사실·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사실·정보 등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29조(시정권고) 위원회는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시정명을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그 밖에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0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1. 인권 · 환경실사의 실시
 - 2.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수정
 - 3.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공개
 - 4.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의 공개
 - 5.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6. 그 밖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업에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시정명령의 이행기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한기업에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32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위원회는 이행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기금 지원에서의 고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분쟁 · 고위험 지역

- 제33조(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 ① 위원회는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분쟁·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분쟁·고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외교부·산업통상

자원부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4조(분쟁·고위험지역의 해제) ① 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분쟁·고위험지역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한다.
 -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분쟁·고위험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장 인권 • 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제35조(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기업이 인권 ·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 해자를 지원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 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환경침 해피해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부정적 영향의 예방 · 구제를 위한 사업
 - 2.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 3.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3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재정자금에의 예탁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위원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민사책임

- 제39조(손해배상) ① 기업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기업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제3자의 행위를 기업의 행위로 본다.
- 제40조(인과관계 등의 추정) ① 제39조의 경우 피해자가 기업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 또는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기업활동이 손해와 관 런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하였 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

- 1.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기업이 이 법 규정을 준수하였어도 손해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제7장 벌칙

- 제41조(벌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지 아니

한 자

- 3. 제11조를 위반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인권·환경실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제2조제4호가목1) 관련)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7. 아동권리협약
- 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9.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1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11.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 13.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별표 2]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2조제4호가목2) 관련)

-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7호)
-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98호)
- 4.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 기구협약 제100호)
- 5.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호)
- 6.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8호)
- 7.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5호)
- 8.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
- 9.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7호)
- 10.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1호)
- 11.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22호)
- 12. 1976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

- 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44호)
- 13. 실업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호)
- 14.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9호)
- 15.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26호)
- 16.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 47호)
- 17.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88호)
- 18. 전리방사선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5호)
- 19.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 기구협약 제131호)
- 20.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국제 노동기구협약 제135호)
- 21. 발암성 물질 및 인자로 인한 직업성 위험요인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9호)
- 22.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국제 노동기구협약 제142호)
- 23.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0호)
- 24.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6호)

- 25.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 26.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0호)
- 27.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2호)
- 28.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70호)
- 29.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5호)
- 30. 2006 해사노동협약

[별표 3]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환경협약(제2조제4호나목 관련)

- 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 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5.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 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 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 정서
-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8.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 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 10.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